

국방부령

군 인 의 지 위 및 복 무 에 관 한 기 본 법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국유재산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584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5. 27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령을 개정하려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(제3조의2)
- 나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의3)
- 다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3조의4)
- 라. 후속조치(제3조의5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~ ○○. ○○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내지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실내공기질 측정)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방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을 포함한다), 합동참모본부, 육군·해군(해병대)·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2. 제1호에 따른 측정횟수 다음 각 목에 따르며, 그 외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를 따른다.

가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: 1년에 1회

나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: 2년에 1회

제3조의3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영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제3조의4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영 제16조의2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제3조의5(후속조치) 영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1차 측정시 기준초과 시설은 원인분석 후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
2. 2차 측정시 기준초과 시설은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 교체,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조치

[별표 1] 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의3 관련)을 신설한다.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PM-10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초미세먼지 (PM-2.5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 세균 (CFU/ m^3)	일 산 화 탄 소 (ppm)
가. 지하작전시설, 도서관·박물관, 대규모 점포, 학교·교육시설, 기념관, 전시관, GP의 지하생활관	100 이하	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-	10 이하
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	75 이하	35 이하		80 이하	800 이하	
다. 실내주차장	200 이하	-		100 이하	-	25 이하
라. 실내 체육시설, 강당, 업무시설, 병영생활, 식당 등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건축물	200 이하	-	-	-	-	-
비고 1. 도서관, 학교·교육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 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강당, 업무시설 또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(PM -10)의 농도가 $200\mu\text{g}/\text{m}^3$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 경우에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 청소하여야 한다.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. 화장실용 배기관 마. 조리용 배기관						

[별표 2]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3조의4 관련)을 신설한다.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Bq/ m^3)	총휘발성유기 화합물($\mu\text{g}/\text{m}^3$)	곰팡이 (CFU/ m^3)
가. 지하작전시설, 도서관·박물관, 대규모 점포, 학교·교육시설, 기념관, 전시관, GP의 지하생활관	0.1 이하	148 이하	500 이하	-
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			400 이하	500 이하
다. 실내주차장	0.30 이하		1,000 이하	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3조의2(실내공기질 측정)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방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을 포함한다), 합동참모본부, 육군·해군(해병대)·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 1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2. 제1호에 따른 측정횟수 다음 각 목에 따르며, 그 외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를 따른다. 가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: 1년에 1회 나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: 2년에 1회 제3조의3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영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1과 같다. 제3조의4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영 제16조의2 제4항에 따른

현행	개정안
	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2와 같다. 제3조의5(후속조치) 영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한다. 1. 1차 측정시 기준초과 시설은 원인분석 후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 2. 2차 측정시 기준초과 시설은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 교체,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조치